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던 군수품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2개 과를 신설하고,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방위사업청 인력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을 조달청으로 이체하며, 조달청에 군수품 지출 및 회계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 소속기관의 인력 6명(7급 6명)을 조달청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구매사업국내 국방물자혁신과 및 국방조달지원과 신설에 따라 업무사항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구매총괄과·혁신조달과·자재장비과·쇼핑몰기획과·쇼핑몰단가계약과 및 쇼핑몰구매과를 두며, 구매총괄과장·혁신조달과장·자재장비과장·쇼핑몰기획과장·쇼핑몰단가계약과장 및 쇼핑몰구매과장”을 “구매총괄과·혁신조달과·자재장비과·쇼핑몰기획과·쇼핑몰단가계약과·쇼핑몰구매과·국방물자혁신과 및 국방조달지원과를 두며, 구매총괄과장·혁신조달과장·자재장비과장·쇼핑몰기획과장·쇼핑몰단가계약과장·쇼핑몰구매과장·국방물자혁신과장 및 국방조달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방물자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군수품 (이하 “군수품”이라 한다) 집행계획 수립 및 조정
2. 군수품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군수품 증 급식·유류·자재 등 계약 체결 및 관리
4. 국방물자혁신과 소관 물품에 관한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5. 국방부 일반회계 예산 재배정

6.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⑩ 국방조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품 중 피복·장구·장비 등 계약 체결 및 관리
2. 국방조달지원과 소관 물품에 관한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3. 군수품 보훈복지단체와 관련된 구매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별표 3 총계 “493”을 “524”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91”을 “522”로 하며, 일반직 계 “490”을 “521”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6”을 “28”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3”을 “100”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0”을 “117”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5”를 “60”으로 한다.

별표 3의2 총계 “508”을 “539”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06”을 “537”로 하며, 일반직 계 “505”를 “536”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7”을 “29”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6”을 “103”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06”을 “11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0”을 “75”로 한다.

별표 7 총계 “457”을 “45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453”을 각각 “447”로 하며, 행정주사보·공

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9”를 “5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매사업국) ① (생략)	제7조(구매사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매사업국에 <u>구매총괄과 · 혁신조달과 · 자재장비과 · 쇼핑물기획과 · 쇼핑물단가계약과 및 쇼핑물구매과</u> 를 두며, <u>구매총괄과장 · 혁신조달과장 · 자재장비과장 · 쇼핑물기획과장 · 쇼핑물단가계약과장 및 쇼핑물구매과장</u> 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u>구매총괄과 · 혁신조달과 · 자재장비과 · 쇼핑물기획과 · 쇼핑물단가계약과 · 쇼핑물구매과 · 국방물자혁신과 및 국방조달지원과</u> 를 두며, <u>구매총괄과장 · 혁신조달과장 · 자재장비과장 · 쇼핑물기획과장 · 쇼핑물단가계약과장 · 쇼핑물구매과장 · 국방물자혁신과장 및 국방조달지원과장</u> -----.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u><신설></u>	⑨ <u>국방물자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군수품 (이하 “군수품”이라 한다) 집행계획 수립 및 조정</u>
	2. <u>군수품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u>
	3. <u>군수품 증 급식 · 유류 · 자재 등 계약 체결 및 관리</u>
	4. <u>국방물자혁신과 소관 물품에</u>

<신 설>

관한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5. 국방부 일반회계 예산 재배
정

6.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⑩ 국방조달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군수품 중 피복·장구·장비
등 계약 체결 및 관리

2. 국방조달지원과 소관 물품에
관한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3. 군수품 보훈복지단체와 관련
된 구매제도 운영 및 제도개
선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93	524	+31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91	522	+31
일반직 계	490	521	+3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6	28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3	100	+7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u>110</u> · ·	<u>117</u> · ·	+7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u>45</u> · ·	<u>60</u> · ·	+15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508</u>	<u>539</u>	+31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506</u>	<u>537</u>	+31
·	·	·	
·	·	·	
일반직 계	<u>505</u>	<u>536</u>	+31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7</u>	<u>29</u>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96</u>	<u>103</u>	+7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u>106</u> · ·	<u>113</u> · ·	+7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u>60</u> · ·	<u>75</u> · ·	+15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457</u>	<u>451</u>	-6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453</u>	<u>447</u>	-6
일반직 계	<u>453</u>	<u>447</u>	-6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9</u>	<u>53</u>	-6
·	·	·	
·	·	·	